

定 款

(2019년 3월 29일 개정 시행)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목 차

제1장 총칙	4
제1조(상호)	4
제2조(목적)	4
제3조(본점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5
제4조(공고 방법)	5
제2장 주식	5
제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제6조(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제7조(주식의 종류)	5
제7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5
제7조의3(주권의 종류)	6
제8조(신주인수권)	6
제8조의2(주식매수선택권)	7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8
제10조(신주의 배당 기산일)	8
제11조(삭제)	9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9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9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10
제3장 주주총회	10
제15조(소집 종류 및 시기)	10
제16조(소집권자)	10
제17조(소집통지 및 공고)	10
제18조(소집지)	11
제19조(의장)	11

제20조(의장의 질서유지권)	11
제21조(의결권)	11
제22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1
제23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12
제24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12
제25조(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12
제26조(주주총회 의사록)	12
제4장 이사·이사회 및 위원회	12
제27조(이사의 수)	12
제28조(이사의 선임)	12
제28조의2(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13
제29조(이사의 임기)	13
제30조(이사의 보선)	13
제31조(대표이사의 선임)	13
제31조의2(이사회 의장의 선임)	13
제32조(이사의 직무)	13
제33조(이사의 보고의무)	14
제34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4
제35조(삭제)	14
제36조(삭제)	14
제37조(이사회 구성)	14
제38조(이사회 소집)	14
제39조(이사회 결의방법)	14
제40조(이사회 결의사항)	14
제41조(이사의 겸업금지)	15
제42조(이사회 의사록)	15
제43조(위임)	15
제44조(이사의 보수)	15
제45조(위원회)	15
제45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16

제45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5
제45조의4(조사 및 보고의무)	17
제45조의5(감사록)	17
제5장 계산	17
제46조(사업연도)	17
제47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17
제48조(이익금의 처분)	18
제49조(이익배당)	18
제50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8
제51조(내규)	18
제52조(준용규정)	18
부 칙	19
제1장 현물출자 및 설립비용	19
제1조(발기인의 성명 및 출자목적 재산)	19
제2조(발기인의 성명 및 인수 주식수)	20
제3조(설립비용)	20
제4조(이미 발행된 우선주)	20
제2장 시행일	21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 ① 회사의 상호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라 한다.
- ② 영문 상호는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산업용 가스 터빈 및 동 부분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임대, 개조 및 서비스업
2. 해외건설업, 무역업 및 동 대행업
3. 기술 용역업
4.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5. 항공기 정비업, 임대업, 위탁판매업, 운송업
6. 복합소재사업
7.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산업용 가스터빈 관련 시뮬레이터 사업
8. 항공 전자 장비 및 동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9. 군납 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
10. 사진, 카달로그 등 기타 인쇄물의 제조, 판매, 서비스업
11. 항공우주박물관, 에비에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업
12. 경제성식물 재배 및 판매업
13.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판매업
14.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5.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회사는 본점을 경상남도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지점, 공장, 연구소, 출장소, 영업소,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 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reaaero.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제6조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7,840,000주로 한다.

제7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하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 금액의 연 1% 이상으로 하여 발행 시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 만큼

우선주식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어느 사업연도에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 시 정한 배당률만큼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 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회사가 유·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3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 (신주인수권)

-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주주총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 ① 회사는 회사 및 상법상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상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의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또는 제45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0조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로 적용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를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액면총액이 수권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의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액면총액이 수권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하며 그 내용은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 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 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3장 주주총회

제15조 (소집 종류 및 시기)

-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6조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그 시기,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각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의장의 질서 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2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다음 사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3. 중요 영업 및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양수
4. 해산, 합병, 흡수합병, 신설합병
5. 이사의 해임

제26조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총회의 결의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이사회 및 위원회

제27조 (이사의 수)

- ①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법령이 정하는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이사 후보의 추천)

- ①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당해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0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27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제31조의2 (이사회 의장의 선임)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②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내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 기타비상무이사 중 선임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되,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가 우선한다.

제33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 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이사회 구성)

이사의 구성은 이사 전원으로 한다.

제38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이사회 소집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 (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 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 등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
2. 관계법령 등에서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사항
3. 연간경영계획 및 신규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5. 제3호 이외의 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타 회사에의 투자 및 투자로부터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의 처분
7. 준법지원인 임면
8. 기타 업무 운영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41조 (이사의 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 회사와 동일 종류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경업 중에 있음을 알고 이사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3조 (위임)

법령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 (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법령에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는 위원회
 - 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8조(이사회 소집), 제39조(이사회 결의 방법), 제42조 (이사회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5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 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 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5조의4 (조사 및 보고의무)

-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한 결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5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5장 계 산

제46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최초의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다음 각 호는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는 보고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5. 현금흐름표 및 주식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의 1주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위의 제1,2항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년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9조 (이익배당)

- ① 이익금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0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51조 (내 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2조 (준용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장 현물출자 및 설립비용

제1조 (발기인의 성명 및 출자목적 재산)

회사의 설립 당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출자목적의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우중공업주식회사

1. 출자재산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제조, 공급 및 배급에 관한 영업,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의 내역은 별지1과 같다.

2. 출자재산의 평가액: 96,400,000,000원

3. 위에 따라 부여할 주식의 수 : 19,280,000주

②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

1. 출자재산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제조, 공급 및 배급에 관한 영업,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의

내역은 별지2와 같다.

2. 출자재산의 평가액: 96,400,000,000원
3. 위에 따라 부여할 주식의 수 : 19,280,000주

③ 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

1. 출자재산

항공기 및 그 부품의 제조, 공급 및 배급에 관한 영업,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의 내역은 별지3과 같다.

2. 출자재산의 평가액 : 96,400,000,000원
3. 위에 따라 부여할 주식의 수 : 19,280,000주

제2조 (발기인의 성명 및 인수 주식수)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식의 종류, 인수 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 ① 발기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 120111 - 0018128
 주 소 : 인천 동구 만석동 6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9,280,000주

- ② 발기인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94211 - 0000480
 주 소 : 창원시 성주동 28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9,280,000주

- ③ 발기인 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 - 1013583
 주 소 :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 8-2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19,280,000주

제3조 (설립비용)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은 일금 5,000,000,000원을 한도로 한다.

상세 내역은 별지4와 같다.

제4조 (이미 발행된 우선주)

- ①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연 5%로 정한다.
- ② 위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존속기간은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 1주에 대하여 보통주식 1주의 비율로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 ③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정관 제7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의 제3항 내지 6항은 위 제1항의 우선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장 시행일

제5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3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9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5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6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3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9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0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3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제11조 및 제14조의2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발 기 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20111-0018128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6
대 표 이 사 추 호 석

동 삼성항공산업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94211-0000480
주 소 창원시 성주동 28
대 표 이 사 이 중 구

동 현대우주항공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10111-1013583
주 소 서산시 성연면 갈현리 산 8-2
대 표 이 사 김 동 진